

##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조 범 근\*\*

김 준 영

배 귀 희\*\*\*

문 명 재

### 국문요약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동학대는 근절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동보호체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원인 및 효과적인 아동학대 보호업무 수행체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와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는 통합연구방법(Triangulation)을 적용하여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살피고자 한다. 첫째는 하드웨어적 개선방안으로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구조적·기능적 변화를 통하여 아동학대 보호업무 관련 네트워크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부 중심의 아동학대 전반의 체계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적 개선방안으로서 부모교육 및 신고자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보호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 및 조사단계에서의 정보공유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주제어: 아동학대, 아동복지, 아동보호체계, 아동보호전문기관, 통합연구방법

## I. 서론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박미정·김현주, 2008)됐으나,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실패한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1~2주에 한 번 꼴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법원 경찰 등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수는

\* 본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3A2044630)

\*\* 제1저자

\*\*\* 교신저자

236명에 달하고 있다(류이근 외., 2016). 문제는 언론에 의한 연이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환기에도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아동학대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보호체계가 왜 아동을 보호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개선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시민들 역시 아동을 학대한 개인을 비난하는 데에 그칠 뿐, 아동을 위해 어떠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는 움직임은 부족했다. 2014년도 칠곡계모 사건, 2016년 원영이 사건 등 자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에만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질 뿐, 시간이 지나면 사회적 관심이 수그러들곤 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시스템, 정부 합동 발굴 시스템, 신속대응 및 처벌기준 강화,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처별 합동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관계부처 합동, 2016). 정부의 대책이 공허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개선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현재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포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원인 및 효과적인 아동학대 보호업무 수행체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수행 단계별 문제점을 살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보호체계 관련 기관들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아동학대 보호 거버넌스에는 그 특성상 다양한 기관들이 관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의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고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Save the Children, 2009; Wulczyn et al, 2010; Delaney et al, 2014).

본 연구는 아동학대보호체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통합연구방법(Mixed Method)을 활용하였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의 장점을 연계해 사회현상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강민아 외., 2007; 김미숙, 2006). 아동학대 수행체계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진행함과 동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통합연구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다른 선진국들과의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단순히 비교해 논지를 전개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할 경험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박명숙, 2006; 임동호, 2008; 이상희 외., 2008; 김형모, 2014; 배상균 2015; 오미희, 2015), 물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통계에 기초하여 논의를 이어간 연구들도 존재한다(김형모, 2008; 문영희; 2010; 김은정, 2016). 그러나 은밀하게 이뤄지는 아동학대의 특성상, 공식적인 지표와 문서만으로는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허남순, 1993; 김상원·이양희, 2014),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 및 보호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와 방법론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경험적인 분석을 진행하더라도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수행절차 중 일부분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박진아·이경숙, 2015; 이경숙 외., 2015; 이수진, 2014). 이로 인해 아동보호체계 전반의 절차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다방면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 II. 아동학대의 개념과 아동학대보호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 아동학대의 개념과 발생원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가혹행위와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세계보건기구(Krug et al., 2002)는 아동학대를 ‘아동의 보호자와 신뢰 관계인에 의해서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그리고 존엄성에 실제적·잠재적 해를 끼칠 수 있는 신체적, 감정적, 상업적이거나 다른 유형의 착취의 모든 형태’들로 정의하고 있다. WHO는 아동학대의 유형으로 물리적 학대, 성적 학대, 감정적·정서적 학대, 방임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물리적 학대는 물리적 힘을 가해서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처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 학대로 인식된다. 성적 학대는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위해서, 성적 행위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동의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아동에게 성적 활동에 관여시키는 행동을 의미한다. 방임은 부모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아동의 발달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하지 않고 방임 또는 유기하는 행동이다. 아동의 교육, 건강, 영양, 적절한 주거 환경 등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 이를 방임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 학대는 아동에게 정서적인 폭력을 가함으로써 아동의 감정 및 도덕의식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감정적·정서적 학대는 단독적으로 이뤄지기 보다는 다른 학대행위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감시자의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고 그 결과가 당장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서 발견이 어려운 경향이 있다(Burchat & Harvey, 2006; Bromfield & Holzer, 2008; 조민상·장석현, 2014).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으로 아동, 가족, 학교와 지역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하고 요소들이 존재하며, 이들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작용하기도 한다(Mathews & Benvenuti, 2014). 따라서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접근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생태학적 모델은 정신병리학적 연구와 사회학 이론을 통합한 접근방법으로서, 개인적 요인들과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태학적 모델은 아동의 특성, 아동을 둘러싼 가족 환경,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 환경, 그리고 더 나아가 문화, 규범과 같은 사회적 환경에서 아동학대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Mathews & Benvenuti, 2015; Burchat & Harvey, 2014; 조민상·장석현, 2014).

개인 차원의 수준의 위험 요인으로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 장애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아기 그리고 미취학 연령기의 아동이 그 보다 나이가 많은 아동에 비해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가

능성이 높다. 취약한 아동의 경우에는 가족 내에서 학대가 일어날 경우에 학교와 같은 가족 이외의 돌봄 제공자가 학대를 발견해낼 가능성이 존재하나 미취학 아동과 유아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개입하기 어렵다(Burchat & Harvey, 2006). 가족환경 차원은 아동의 가족 그리고 가까운 친구와 같은 사회적 차원을 의미한다. 특히 가족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의 회복을 위한 주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부모의 강한 보호 속에 있는 아동은 학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다. 뿐만 아니라 학대 피해를 입더라도 부모에게 강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비해서 학대 피해로부터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Mathews & Benvenuti, 2014). 지역 공동체 환경은 이웃, 직장, 학교와 같은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인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거시적인 사회적인 맥락을 지칭하는 것으로, 아동의 물리적 처벌에 대한 인식과 같은 규범과 문화,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안전망의 유무와 같은 요소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Burchat & Harvey, 2006; Mathews & Benvenuti, 2014).

## 2. 아동보호체계의 구성요소와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 1) 아동보호체계의 의미와 그 핵심요소

아동보호체계는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체계를 의미한다(Delaney et al., 2014). 아동보호체계에는 학교, 복지시설, 지역사회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원활한 아동보호체계의 작동을 위해서는 이들 행위자 간의 통일된 접근을 취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Delaney et al., 2014).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의 핵심 요소로는 다음의 7가지 요소가 있다(Save the Children, 2009; Chames & Lomofsky, 2014; Delaney et al., 2014).

#### ① 아동보호 법과 관련 정책

아동보호체계는 법에 근거해야 하며 이로부터 집행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이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명확한 집행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세우는 일은 아동보호체계의 책임성 도모와 집행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는 아동보호체계에 국가, 지방정부, NGO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여하므로 이들 간의 책임의 경계와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위자들 간에 공통된 아동정책 기준이 존재하였을 때에 기관들 간에 관점 차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협력의 문제와 집행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Save the Children, 2009; Chames & Lomofsky, 2014).

#### ② 아동보호에 대한 데이터와 지식 축적

아동학대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사회 내에 존재하는 아동학대의 위험요인을 밝혀내는 일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아동보호체계 수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Save the Children,

2009). 정보의 부족은 위험요인에 대응하는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게 한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는 다양한 기관들 간의 서비스 연계를 만들어 내는 데 유용하다. 경찰, 병원,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그리고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아동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갖추고 아동의 취약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사전개입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상해감시시스템(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을 통하여 상해로 인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정보가 관련 연방정부 기관들 사이에 공유된다. 특히 법무부에서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며, 질병관리본부는 아동을 향한 폭력을 포함한 여러 상해에 대해 자료분석을 진행한다(김지혜 외., 2013). 아동보호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수집해야 하는 정보로는 학대 사건에 대한 통계와 효과적인 예방 및 보호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등이 있다(Chames & Lomofsky, 2014).

### ③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리더십과 조정능력

아동보호체계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NGO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입한다. 또한 아동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보호체계를 넘어, 건강, 복지, 교육, 사법 영역과의 적절한 관계를 맺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체계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간의 협력 조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리더십과 조정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보호체계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 및 감독하는 정부 부처가 존재해야 한다. 또한 여러 행위자들 간의 공식적인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공동의 프로토콜을 형성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필요가 존재한다(Save the Children, 2009; Wulczyn et al., 2010; Delaney et al., 2014).

### ④ 사회 변화를 위한 의사소통 교육 그리고 동원 능력

아동의 보호는 아동보호체계 관련 행위자들만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없다. 아동 학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에 대한 폭력과 물리적인 훈육을 당연시 하는 사회에서는 아동보호체계 관련 행위자들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 또는 교육환경에 개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위험에 처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일은 이웃과 같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대중들이 아동 보호 이슈에 보다 관심을 갖고,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Save the Children, 2009).

### ⑤ 아동친화적이며 높은 대응성을 갖춘 아동보호시스템

아동학대 피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시에 사건 현장에 빠르게 개입하여 학대행위자를 아동으로부터 분리하고 피해 아동이 학대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재학대 사례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야기하는 주요한 위험 요인들에 선제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아동학대의 위험요인인 가난, 가족적 환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Save the Children, 2009; Chames & Lomofsky, 2014).

#### ⑥ 예산지원과 자원

아동보호체계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관여하는 특성상 서비스 제공이 파편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하여 아동보호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예산과 자원이 적절히 배분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게다가 아동보호체계는 긴급한 문제를 다루지만, 여타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비해서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상의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Chames & Lomofsky,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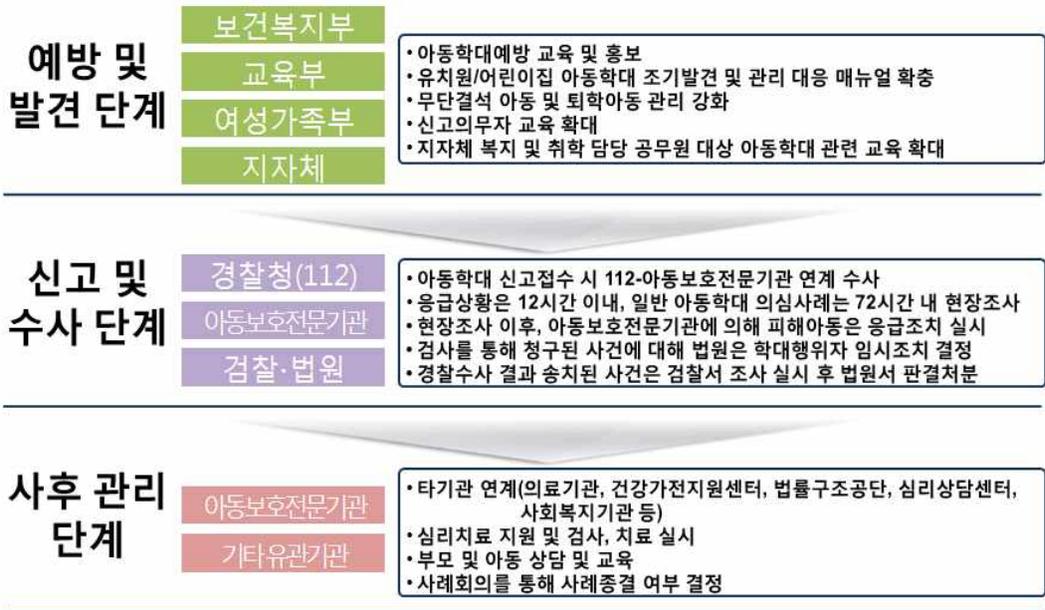
#### ⑦ 높은 능력을 갖춘 직원

학대피해 아동과 주의 깊게 소통하고, 피해 가정에 적절하게 개입하는 등, 아동 친화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갖춘 직원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동학대 전문 기술과 경험을 갖춘 인적자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아동보호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대학이나 기관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며 전문 경험을 키울 수 있는 기회 역시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보호를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직원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시스템이 요구된다(Delaney et al., 2014; Chames & Lomofsky, 2014).

## 2) 우리나라 아동학대 보호 수행체계와 그 단계별 업무

아동학대사건 대응단계는 예방 및 발견 단계, 신고 및 수사단계, 그리고 사후 관리단계라는 3 단계로 분리할 수 있다. 예방 및 발견 단계에서 주요하게 역할을 맡은 기관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기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관에 소속된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자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최근 아동학대 예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교육이 대두하기 시작하면서 예방 단계에서의 보건복지부, 교육부,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부모들이 올바른 양육 태도 및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관계부처합동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관계부처 합동, 2016).

〈그림 1〉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단계별 수행체계



보건복지부는 전반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중요한 집행 기관인 아동학대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해서 3년마다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예방 측면과 관련하여 각종 캠페인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교육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신고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기관 내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와 퇴학 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폭력 예방과 더불어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교육활동과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내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가정폭력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신고자의무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신고 및 수사단계에서의 주요한 행위자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며, 이들 간 공조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가 이뤄진다. 112로 신고사례가 접수되면, 해당 지역의 가장 가까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되어 업무가 진행된다.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사례가 접수되면 경찰과 상담원은 지체 없이 현장으로 출동해야 한다. 이 때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에게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상호동행을 거절할 수 없다(허남순·고윤순, 2015). 현장조사 이후 검찰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실시하고, 법원은 송치사건에 대해 구형 및 판결을 실시하게 된다.

사후단계에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피해아동 및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원활한 회복을 돕는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의료기관, 법률구조 공단, 사회복지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적, 법률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

###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보호 수행체계 전반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이희연 외., 2014; 김은정, 201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황과 역할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5조 및 46조에 의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구분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각 지역 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업무를 지원한다. 이들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정책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례들을 종합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아동학대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학대피해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 재학대방지를 위한 개입,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홍보·협력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장화정 외., 2015:3). 결국 아동학대 보호 수행체계 일련의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주체는 바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이희연 외., 2014).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궁극적으로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학대행위자의 재학대를 방지하는 등 가족의 회복과 기능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로는 상담서비스, 의료서비스, 심리치료, 가족기능강화서비스(가정지원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 서비스대상자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일시보호시설 및 쉼터를 통해 아동을 일시보호) 등이 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56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2곳(서울 1곳, 부산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정화정 외, 2015).

## Ⅲ.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 아동학대 보호체계에 대한 연구들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와 해외 아동보호체계 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현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을 탐구한 연구들이다(박명숙, 2006; 임동호, 2008; 이상희 외., 2008; 김형모, 2014; 배상균 2015; 오미희, 2015). 이들 연구들은 영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법적인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안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 사례를 연구한 이상희 외.(2008), 배상균(2015), 오미희(2015) 등은 일본의 지역 공동체에 기반

을 둔 아동학대 보호체계를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일본에서는 지방정부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보호 등을 위해 관계기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법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이상희 외.(2008)는 이 같은 조치가 아동학대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풍토에서 비롯됐다고 보았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연구한 학자(박명숙, 2008; 임동호, 2008)들은 가족의 기능 회복에 초점을 둔 아동보호서비스 제공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앙정부의 강한 의지가 우리나라의 보호체계에 좋은 시사점을 준다고 보았다. 특히 방명숙(2006)은 미국의 아동보호 서비스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긴급서비스, 상담서비스, 가정보조 서비스, 정신건강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가족 기능 회복을 도모함으로써 학대피해 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연구들이 있다, 아동보호체계에 참여하는 부처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기관들 간의 정확한 업무 분담과 협력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김형모, 2008; 문영희, 2010; 김지혜 외., 2013; 김은정, 2016). 한편, 교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신고의무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신고의무자의 의식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박진아·이경숙, 2015; 이경숙 외., 2015; 이수진, 2014).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체계 중에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들이 있었다(박미정·김현주, 2008; 이희연 외., 2014). 박미정·김현주(2008)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에게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 간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상담원들은 사례관리와 아동학대예방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나, 실제로는 신고와 전화상담에 치중하고 있었다. 이에 신고 및 조사업무와 예방 및 사례관리 업무를 구분하고, 예방 및 사례관리의 경우에는 유관기관과의 서비스 연계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희연 외.(2014)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아동 사망 사건으로 인해 겪는 스트레스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종사자들이 인력부족과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와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아동학대 보호체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었으나, 현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피고,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대안을 도출해낸 연구는 많지 않다. 해외 사례들을 검토한 연구들은 각 국가들의 법률만을 연구 분석 단위로 삼고 있어, 실제 해당국가와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따라서 연구에 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경험적 분석을 진행하더라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통계만을 토대로 논지를 전개해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 사례가 공식적인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설문조사와, 인터뷰 자료, 그리고 2차 자료 등을 통한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허남순, 1993; 김상원·이양희, 2014).

아래의 <표 1>과 같이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안들을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수행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표 1〉 아동학대 보호체계 선행연구 정리

논문	연구방법	단계	해결책
박미정·김현주 (2008)	설문조사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대부모와 가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의료·복지·교육 기관들 간의 체계적인 연계체제 구축</li> <li>• 고위험 부모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 서비스 강화</li> </ul>
		보호체계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환경 개선 및 인력확충</li> <li>•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신고접수 및 전화상담업무와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업무로 구분하고, 후자의 업무를 별도의 사회 복지사에게 맡겨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의 업무 경감</li> </ul>
문영희 (2010)	문헌조사	신고 및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호규정 강화(수사기관에게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비밀의무 부여)</li> </ul>
		사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강화를 통한 원가정생활의 보장</li> </ul>
		보호체계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과 청소년 개념 구분의 명료화와 이를 통한 업무중복 해소</li> </ul>
김지혜 외. (2013)	신문기사 분석	신고 및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이 위험상황에 놓여 있을시,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와 아동을 분리조사 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li> </ul>
		보호체계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li> <li>• 영유아 보호를 위한 정보시스템강화(영아사망을 통계에 포함, 출생 직후 모든 아동에 대한 등록 의무화, 아동사망사례조사팀 운영)</li> <li>• 학교, 경찰, 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과의 연계 강화</li> </ul>
박진아·이경숙 (2015)	포커스그룹인터뷰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현장에 맞는 아동학대 가이드라인 및 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li> <li>• 감정노동을 하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통한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통해 보육교사로 인한 학대 예방</li> </ul>
		신고 및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내부고발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신변보장</li> <li>•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가정 내 아동학대 사례 판정과는 다른 별도로 보육현장에 맞는 사례판정 조사시스템의 구축</li> </ul>
		보호체계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을 위한 훈육행동과 아동학대 간의 명확한 구별 및 정의 제시</li> </ul>
이경숙 외. (2015)	설문조사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 대상으로 정서학대 및 중박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 강화</li> <li>• 보육교사에 아동학대 발견 후 대처를 위한 프로토콜 제공</li> <li>•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육교사로 인한 학대 예방</li> </ul>
		신고 및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고발에 대한 신변보장 및 권리보호</li> </ul>
이희연 외. (2014)	심층면접 기법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li> </ul>
		신고 및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자에 대한 의무체계 강화</li> <li>• 영유아 보호를 위한 가정방문 및 양육서비스 강화</li> </ul>
		보호체계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한 업무지원체계 구축</li> </ul>

## IV.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조사

###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합한 통합연구방법(Mixed Method)을 사용하였다. 최근 질적연구 방법의 장점과 양적연구 방법의 장점을 연계하여 사회현상의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 효과적인 대안 도출을 이뤄낼 수 있는 통합연구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강민아 외., 2007; 김미숙, 2006; Taskakkori & Tddile, 1998; Heiselt & Sheperis, 2010; Creswell, 2012). 통합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활용된다. 첫째 삼각화(triangulation) 또는 결과의 수렴성 탐색, 둘째 상보성 혹은 어떤 현상의 중첩 및 상이한 국면 조사, 셋째, 역설·모순·신선한 관점의 발견, 넷째 전개 혹은 첫 번째 방법의 활용에서 나온 결과를 두 번째 방법의 정보로 쓰는 제 방법의 순차적인 활용, 다섯째 확장 또는 어떤 프로젝트의 폭과 범위를 더하기 위한 통합방법의 활용 등이다(Taskakkori & Tddile, 1998).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수행체계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각각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두 방법의 장점을 종합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보강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다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의 분석을 통하여 아동학대 수행체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들의 의도나 심층적인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강민아 외., 2007). 이에 구조화된 설문을 활용하면서도 인터뷰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함께 진행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126부가 회수되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이유는 이 기관이 아동학대 보호 수행체계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이희연 외., 2014). <표 1>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이 밝힌 현 문제들을 토대로 질문지를 구성하고, 아동학대보호체계의 수행 단계별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후 설문조사에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많이 공감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앞서 특정 기관 종사자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가 아동학대보호체계 관련 모든 종사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이외에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중앙부처 공무원(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관계자 등 아동학대 보호체계 관련 종사자 전반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sup>1)</sup>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총 2번에 걸쳐 진행하였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의 부서 직위 등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아동보육과 주무관, 교육부 학생원무정책과 정신건강 담당관,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담당관,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해바라기 센터 담당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해바라기 센터 지원 담당 직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2명), 지역아동보호

다. 1차 인터뷰에서는 경찰청 관계자와 여성가족부 관계자 4명이 참여하였으며, 2차에서는 1차 인터뷰 참여자들과 더불어 나머지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참여해 총 10명이 참여하였다.

## 2. 설문조사 결과

먼저 아동보호체계에 참여하는 기관들 사이의 체계적인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동보호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복지, 교육, 보건, 사법 등 다양한 분야를 가로지르는 협력이 필요하므로, 학대받은 아동의 신체적·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정윤수·이정희, 2003). 따라서 아동학대 보호체계를 담당하는 부처의 리더십과 조정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Save the Children, 2009; Wulczyn et al., 2010; Delaney et al., 2014). 이에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컨트롤 타워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였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아동정책 분야 최고기구이다(김형태, 2016).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보호체계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관여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정책 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나누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학교 등으로 공간에 따라 부처별 책임을 분산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대아동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처들 간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존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박세경 외., 2014; 류정희 외., 2015; 김형태, 2016).

〈표 2〉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측정 문항	빈도(명)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21	16.7
그렇지 않다	59	46.8
보통이다	43	34.1
효과적이다	3	2.4
매우 효과적이다	0	0
계	126	100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효과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매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46.5%의 응답자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답을 하였으며, 16.37%의 응답자는 전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결과(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안, 2011)를 통해

전문기관 직원(1명), 경찰청 아동학대 담당(2명)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2008년 이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다른 정부부처에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정책분절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절차 별 문제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를 아래의 <표 3> 그리고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3>는 아동보호체계의 세 절차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예방 및 감시 단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었으며(41.3%),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받은 단계는 사후관리였다.(32.5%), 이 문항에서도 현 아동보호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3> 아동보호체계 절차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측정문항	빈도(명)	비율(%)
예방 및 감시 단계	52	41.3
신고 및 수사 단계	25	19.8
사후관리 단계	41	32.5
문제없음	0	0
기타	8	6.3
계	126	100

보다 구체적으로 각 절차 중에서 어떤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의 <표 4>와 같이 설문을 진행하였다. 예방 및 감시단계에서는 부모교육이 가장 문제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아동학대 예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교육이 대두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모들이 아동의 특성과 올바른 교육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있을 때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신고 및 수사 단계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와 경찰 간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차이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아동학대특별법 제정 이후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함께 현장을 출동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결정하는 일차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에서는 이들 간의 인식차이로 인해 협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경기도 내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과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전경숙(2014)는 경찰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경찰관들이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동만을 아동학대로 보는 경우가 있음을 밝혔다. 반대로 경찰들은 상담사들이 사소한 일을 과장하여, 가족을 파탄내는 행동을 한다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사들은 신고 및 수사를 진행하는 인력부족 문제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었다. 이는 최근에 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건처리지원서비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해 업

무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례법 시행 이전(2013.09.29.~2014.08.31까지)에는 사건처리지원서비스가 598건에 불과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2014.09.29.~2015.08.31까지)로는 8,428건으로 14배 정도 증가하였다. 사건지원처리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진행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고소 고발 및 처분 등에 대한 서비스가 급증하였다(정화정 외., 2015).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학대피해 아동과 가정 회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기관과 인력 부족이 매우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숙(2014) 역시 전문 상담사들이 사건충돌 및 사건관리만으로도 이미 업무가 포화상태이어서 피해아동과 가정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표 4〉 아동보호체계 수행 단계별 문제점 대한 인식

수행 단계	측정 문항	빈도(명)	비율(%)
예방 및 감시 단계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부족	5	4.0
	부모교육의 미흡	71	56.3
	교육기관 가정방문기능 유명무실	16	12.7
	신고의무자 및 일반 시민들의 낮은 신고	16	12.7
	기타	17	13.5
	계	125	100
신고 및 수사 단계	경찰과 아동학대에 대한 입장 및 인식차이	52	41.3
	아동학대 개입을 위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매뉴얼 부재	6	4.8
	부족한 인력	43	34.1
	민간기관이 관여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수사 비협조적 태도	24	19
	기타	1	0.8
	계	126	100
사후관리 단계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의 부족	13	10.5
	학대피해 아동과 피해가정의 회복을 담당하는 전문 사회복지 기관 및 인력의 부족	105	84.7
	기타	6	4.8
	계	124	10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문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5〉는 과반이 넘는 상담사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와 예산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열악한 상황을 다른 조사와 지표를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등 아동관련 NGO 단체들이 추산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인구 10만 명당 1개소가 설치되어야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도 최소 100개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평균적으로 7명의 아동보호전문상담원이 5개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신고 접수, 현

장 조사, 아동보호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김형모, 2014). 또한 2015년 안산아동 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상담원은 주 68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월 13회의 야간출동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었다(김은정, 2016).

이와 같은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이직률이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40%에 달하기도 하였다<sup>2)</sup>. 근무하면서 축적되는 경험이 중요한 학대 아동 보호 업무의 특성상 낮은 근무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 인력의 전반적인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 게다가 아동학대에 전문화된 인력을 교육기관을 통해 양성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담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그로부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Delaney et al., 2014; Chames & Lomofsky, 2014).

〈표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

측정 문항	빈도(명)	비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와 예산 증가	65	51.6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수사기능에 집중하게 하고, 사후관리 전담기관을 새로 창설	23	18.3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 책임을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이관	26	20.6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으로 관계기관들 간 정보공유 강화	8	6.3
기타	4	3.2
계	126	100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보호체계에 관여하고 있는 타 기관들과의 정보교류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는 기관들 간 적절한 정보 공유를 통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사례 관리와 학대 고위험군 가정을 미리 파악하고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Chames & Lomofsky, 2014).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적절한 정보공유 시스템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 정보 공유 현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25.4%)이 긍정적인 인식(17.5%)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보통(56.7%)라고 응답하여,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기관들의 정보공유 정도

측정 문항	빈도(명)	비율(%)
매우 잘 이뤄지고 있음	1	0.8
잘 이뤄지고 있음	21	16.7
보통이다	72	57.1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음	26	20.6
매우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음	6	4.8
계	126	100

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이직률은 201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지는 26.60%, 2015년 1월부터 10월 동안에는 14.8%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정화정 외., 2015).

### 3.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으로 기관들 간 협력체계의 부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예산부족과 그로 인한 역할 부족,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와 경찰관 간의 인식차이, 아동학대 예방교육 미흡, 마지막으로 정보공유 미흡을 꼽을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외에 아동학대보호체계에 참여하는 다른 주요 행위자들의 인식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1) 기관 간 협력체계의 부족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가자들은 아동학대 보호체계에 매우 많은 기관들이 관여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조정하는 역할이 지금까지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수사, 예방, 사후관리 등의 기능들이 각 부처들에게 나뉘어 있는 상황이므로 유기적인 보호체계 운영이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관 관계자 2 :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있었으면 함.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가 각각 사업을 따로 하고 그리고 이들 사업 간 중첩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음. 협업도 제대로 안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업들이 일관적이지 않은 상황임.

교육부 관계자 : 기관과 기관이 일하면 접점이 있어야 하는데, 수사는 여기 예방은 여기 대책은 여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음. 그동안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소극적으로 진행해왔는데 앞으로는 부처가 잘 협업해서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가 학대아동 보호업무를 맡은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1차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고 있으며, 학대아동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효과적으로 아동학대보호체계를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1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실시를 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1년에 몇 차례 점검과정을 실시함. 그러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님.

보건복지부 2 : 14년부터 아동학대사건들이 급증하면서 그 관심이 커졌음. 이제 막 업무가 커지기 시작함. 현재 담당자가 2명임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 살펴보니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산부족과 그로 인한 구심점 역할 부족

앞서 설문조사에서 밝힌바와 같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서 본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아야 하는 역할을 경찰들이 대신 맡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경찰 관계자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니라 경찰이 사회복지기관 및 학교 등과 학대 피해 아동을 연결하고 재학대 여부를 감시하는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지역 곳곳에 집행기구와 인력이 배치된 경찰이 일부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 인력이 너무 부족해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장에서는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함. 학교, 지역주민 등의 관계에서 여러 이유로 신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는 아보전이 그 중심에 있으므로 아보전에 대한 기관을 늘리고 인력 충원이 필요함. ... 양적인 부분이 향상되어 질적인 부분이 향상되는데 현재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양적인 부분의 충원이 필요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1 : 사실상 현장조사만으로도 버거운 상태라서 지역사회의 외부 자원(교사, 유치원 선생, 복지사 등)과 접점이 있는 경우,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함.

경찰청 관계자 1 : 경찰청에서 여기(예방 및 사후관리)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반론이 있음. 만약에 다른 기관의 인프라가 되어 있다면 이관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지금차원에서는 오히려 경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경찰관 관계자 2 : 실질적으로 구심점 역할을 상급서에서 많이 하고 있음. 지침이 직접 하라는 지침이 아니고, 협업에서 연결해라. 사회복지 공무원, 학교라든지, 아보전, 사회복지 기관이든지 연결해서, 재발 방지하고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되도록 도와주어야라는 지침임. 상급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족해서, 결국 전국 경찰서 5개당 1개의 아보전이 있는 꼴인데, 그마저도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음. 그래서 지역에서는 경찰관이 조금 더 영역을 넓히는 경향이 있고. 의무는 아니지만 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음. 실질적으로 경찰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함.

경찰이 아동보호체계에서 일정 부분을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아동학대 전문가들이 아닌 만큼, 아동학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아동학대 사례는 아동학대자에 대한 사법적인 처벌로서 종결될 수 없고 학대피해 아동 및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적인 접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

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대신 맡게 되면서 경찰들 역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관 관계자 2 : 지금 업무 기준과는 달리 이제는 아동을 복지 기관에 연계만 하고 끝내라는 식으로 지침을 수정할까 하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학대담당 경찰관의 이직률이 아보전 만큼 높지는 않지만 6개월 이상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음. 업무 자체가 부담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선호도가 낮음.

### 3)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 학대에 대한 인식 차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 결과에서도 경찰 관계자들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발언을 통해 두 기관 간 인식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인터뷰 참가자들은 경찰청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사이의 입장 차이가 점차 줄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 1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을 많이 하는데, 이제 시각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동학대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가'임. 입건이나 수사까지는 안 되도 될 부분인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복지를 위해서 강하게 보는 부분이 있어서 마찰이 있음. 기존에는 상호간에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전담 경찰관제가 도입되면서 마찰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음.

경찰청 관계자 2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접근하는 패러다임과 경찰이 접근하는 패러다임이 다를 수밖에 없음. 경찰은 법적 마인드로 법에 접촉이 되느냐 아니냐의 관점으로 봄. 아보전은 일반적 혹은 학문적 개념의 학대에 초점을 맞춰서 간극이 있었음. 하지만 14년 이후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일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청과의 협업을 많이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합동해서 매뉴얼 만들고 협동을 하다 보니 그 차이가 점점 줄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함.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경찰과 협업이 잘 된다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어려움을 밝히는 지역도 있음.

## 3.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자 및 부모 교육 미흡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학교의 경우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할 교사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또한 학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의뢰하더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 많았다. 이는 신고 및 수사 영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서, 예방 교육 의뢰가 들어와도 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교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신고자 의무교육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주무부처에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2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가 많아지면서 예방교육보다는 사례관리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여 현재는 예방교육에 대한 역할은 감소했음. 외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교육을 요청하지만 업무가 과다하여 아동학대사례 자체에 집중하려는 상황임.

교육부 관계자 : 교육 관계자에 대한 신고의무자교육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를 받아서 이뤄지면 좋을 것 같음. 그런데 이분들의 고유 업무가 있고 업무가 많아서 출강하기 어려운 상황임. 교육청에서 대규모 교육을 할 때에는 출강을 해주심. 그러나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자체적으로 연수가 실시되는 경우가 많음. 교사들이 자체로 강의안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 상황임.

교육부 관계자 : 신고자의무교육은 법령에 연 간 1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되어있음. 매년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점검을 하고 있음. 법령상 다 1시간은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지만, 정확히 몇 시간 하고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움. 교사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이 많아서 신고의무자 교육 준수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기도 어려움.

최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부모 교육이 학부모들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학교에서 진행할 때 부모들이 자신을 잠재적인 아동학대 행위자로 인식하고, 이에 반발하거나 교육에 미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 학부모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학부모를 끌기 위해서는 양육방법 안내 또는 '자녀 제대로 키우기'라는 방식으로 해야하는 상황임. 부모들이 교육기관에서 자신들을 잠재적인 학대 행위자라고 인식한다고 생각해 교육에 반발하는 경우가 많음.

#### 4. 포괄적인 정보공유시스템의 부재

인터뷰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의 사건 정보 공유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팩스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교육부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교 간의 정보공유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서 교사가 자신의 학급 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는 학생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들 사이의 정보공유도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관계자 1 : 지금은 그냥 통보하고 있음. 경찰관이 팩스로 통보한 부분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들이 국가아동학대보호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있음. 아보전도 경찰도 같이 사후

관리를 하는데, 양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교육부 : 현재 시스템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협조 요청을 하고 학교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음. 정보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을 하는 상황임. 공식적으로 뭐가 있는 건 아님.

경찰관 관계자 2 : 정보가 중요함. 장기결석 아동과 아동학대가 연결됨. 가출 아동 실종 이런 것도 다 아동학대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게 공유되지 않다보니 따로따로 가는 부분이 있음.

각 기관별로 갖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 아동 학대라는 개념으로 공유가 된다면 사전에 인력이 투입될 부분을 확인하면서 사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발굴도 쉬울 것 같은 느낌이 있음.

그렇지만 학교와의 정보연계 부분에 있어서 학생의 사생활 보호 침해가 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학생이 학교에게 학대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경우에, 그 의사를 반박하기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1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교와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은 경험에 일부의 경우 아이가 학교에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딜레마가 있음. 특히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정보를 연계함에 있어 법적인 보호가 부족함.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법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함.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 학교에 알리지 말 것을 피해자가 신신당부하는 상황에서 아보전이 학교에 이것을 알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임.

## VI. 개선방안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보호체계가 기관들 사이의 낮은 수준의 공조와 협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및 예산 부족, 신고의무자와 부모에 대한 교육 미흡, 마지막으로 기관들 사이의 정보공유체계의 미흡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학대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하드웨어적 개선방안과 소프트웨어적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하드웨어적 개선방안은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구조적·기능적 변화를 통하여 아동학대 보호업무 관련 네트워크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적 개선방안으로서 부모교육 및 신고자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보호관련 기관간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 및 조사단계에서의 정보공유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 1. 하드웨어적 개선 방안

### 1) 단기적 개선방안

####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강화 및 예방기능 추가 수행

아동학대 보호를 위해서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아동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역 자원에 대해서 어떤 다른 기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이 수사기능 이외에 사례관리, 심리서비스 제공, 관계 기관 연계 등 적절한 사후관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예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예방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게 되면서, 아동학대 예방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이봉주, 2016). 하지만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의 집행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므로, 이들 상담원들은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이고도 실천적인 지식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예방기능 수행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매뉴얼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3) 경찰-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아동학대 판단 기준 공유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에 함께 현장에 출동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간의 아동학대에서 의 입장차이 때문에 적절한 협력이 나타나지 않은 사례들이 보고되었다(전경숙, 2014). 경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로 다른 학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을 시에는, 위기에 처한 아동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개입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기관들이 동일한 판단 기준을 갖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공동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4)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의 아동학대 예방기능 강화

가족과 학교는 아동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라는 점에서, 가족과 교육현장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예방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존재한다. 가족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이 가족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따라서 가족 관련 정책을 책임지는 여성가족부의 아동학대 예방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는 아동과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면서 신고 의무자이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의 행동징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한다면, 보호체계 관계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아동 보호를 위해 개입할 수 있게 된다(정윤수·이정희, 2003).

#### (5) 아동정책 조정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

여러 행위자가 개입하는 아동학대보호체계의 특성 때문에 보호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호체계를 관리 및 조정 기능을 전담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나누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아동보호체계는 현재 청소년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아동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학교생활에서의 위험요인을 담당하는 교육부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정책의 중복, 정책의 일관성 결여 및 분절, 아동학대보호체계에 대한 책임성이 모호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의 통일성 도모, 부처 간 공조 강화, 그리고 부처 간 정보공유 강화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의 아동정책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존재한다(김형태, 2016)

## 2) 장기적 개선방안

### (1) 복지부 중심의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아동학대 보호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보호 정책 집행단계, 즉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사후관리체계에서 맡은 역할이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해당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집행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중심의 아동학대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찰관이 아동학대 보호 전문가가 아니며, 아동학대는 사법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학대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위해서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정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다시 적절한 아동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이경은·김미경, 2013). 그러므로 학대 피해 아동과 가정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 2. 소프트웨어적 개선방안

### 1) 부모 교육 및 신고 의무자 교육 강화

#### (1) 단기적 개선방안

### ① 학교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부모에 대한 교육 강화

최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부모교육 강화 대책이 마련되는 등,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교육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는 부모들이 아동학대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심지어는 자신들을 잠재적인 아동학대 범죄자로 여긴다고 반발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동학대 사건의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며, 부모에 의한 학대 사례는 발견이 어렵다는 점에서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필요가 존재한다.

### ② 의무신고자 교육 강화

우리나라 신고자 의무자의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교육부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의무자 교육을 제대로 관리 및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동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에 따르면 아동학대 전체 신고 중에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012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이경숙 외.(2015)의 연구에서도 동료교사의 아동학대를 목격한 어린이집 교사의 39.6%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처럼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과 같은 이론 차원의 명목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실제 사건 발생 시의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박진아·이경숙, 2015; 이경숙 외., 2015).

## (2) 장기적 개선방안

### ① 아동학대 관련 의무교육제도 마련

아동학대 예방은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폭력을 당연시하고, 이를 정당하게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심각한 학대가 발생하기 이전에 신고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며, 아동 보호를 위한 적절한 사회적 개입이 이뤄지기도 힘들 것이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Save the Children, 2009). 이와 관련하여 출산 전, 후의 부모들을 대상한 교육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에서도 가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시에 아동학대 의무교육을 수강하게 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아동에게 학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았다.

교육부 관계자 : 양육수당 추진 시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교육 보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음. 법원에서도 이혼소송 시에 이혼 가정 중에서 부모교육을 이수해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음.

경찰청 관계자 1 : 신고의무자교육 보다도 부모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됨. 결혼 전 필수적으로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함. 두 번째는 학대에 익숙한

아이들은 본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모름.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도 있음.

## 2) 아동보호관련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1) 단기적 개선방안

#### ①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 및 조사 관련 정보 공유

특례법 재정 이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관이 동행수사를 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두 기관이 각각 수사하게 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두 기관 간의 인식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서 아동학대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상호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현재 아동보호 수사와 관련한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두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②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학교와 부분적인 공유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학교와 공유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이는 학교에서 학대 아동에 대한 정보를 갖춤으로써 아동학대 재발 여부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결석아동의 경우 방임으로 인한 학대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가 갖고 있는 정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공유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그렇지만 현재 학교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협조와 정보 공유는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 (2) 장기적 개선방안

#### ① 아동학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관련 기관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병원, 교육 기관, 사회복지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면 아동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위기 가정에게 사전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학대 발생 여부를 감독하는 일 역시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그리고 각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동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아동에게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해진다.

물론 여러 기관들 간의 아동을 중심으로 한 정보 서비스를 공유할 경우에, 이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공유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시스템을 설계 및 운영 시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표 7〉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

대분류	분류	단기	장기	고려 사항
하드웨어적 개선	구조·기능적 변화를 통한 개선	-중앙아보전의 지원기능 강화 및 지역아보전의 예산 및 인력확대를 통한 기능강화와 예방기능 추가 -여성부/교육부의 아동학대 예방기능 강화 -국무조정실의 아동학대 정책 조정기능 강화 -경찰-지역아보전 연계 강화	-복지부 중심의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중요도 긴급도 실행가능성
소프트웨어적 개선	부모 교육 및 신고 의무자 교육 강화를 통한 개선	-학교와 아보전을 통한 부모에 대한 교육 강화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아동학대 관련 의무교육제도 (결혼 전 또는 출산 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통한 개선	-경찰, 아보전의 신고 및 조사 관련 정보 공유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학교와 부분적인 공유 (개인정보보호)	-아동학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VII. 결론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는 근절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학대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이 매년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동보호체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아동학대 보호체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는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안을 도출해내고자 시도하였다. 이전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종합한 통합연구방법을 통하여 아동보호체계의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와 인력 부족의 문제점과 함께 신고의무자 교육 및 부모교육이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계되어 있는 각 기관들의 협력수준이 낮으며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미비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하드웨어적 개혁과 소프트웨어적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적 개혁안으로 구조와 기능적 변화를 통해서 아동학대 업무 관련 네트워크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경찰 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방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의 업무기능을 보다 더 강화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지부 중심의 아동학대 전반의 체계 조성이 요청된다.

소프트웨어적 개혁안 중 첫 번째는 부모 교육 및 신고자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단기적

으로는 학교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부모에 대한 교육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출산 전이나 혼인 전 아동훈육교육을 받게 하는 등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을 의무화를 통해 아동학대를 줄여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두 번째 대안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이다. 단기적으로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 및 조사 단계에서의 정보공유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정보에 관한 내용을 학교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공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아동학대 관련 기관들의 정보들을 공유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동학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물론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아동과 해당 가족의 개인적인 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동욱. (2014). 한국에 있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26: 213-240.
- 강민아·손주연·김희정. (2007). 통합연구 방법 적용가능성에 대한 탐색연구 : 지역 보건 정책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 조사에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방법의 통합적 적용, 「한국행정학보」, 41(4): 415-437.
- 관계부처 합동. (2016).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 김고은·이희민. (2013). 경남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 경남발전연구원, 「정책포커스」, 26: 1-65.
- 김기현·김미숙·양심영·하태정. (2014).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의 서비스 연계성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7: 1-31.
- 김미숙. (2006). 양적방법과 질적방법의 통합에 대하여. 「교육사회학 연구」, 16(3): 43-64.
- 김상원·이양희. (2014). 아동의 학대경험의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기초연구, 「아동권리연구」, 18(1): 27-47.
- 김은정. (2016).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정책, 「보건복지포럼」, p31-43.
- 김지혜·정익중·이희연·김경희. (2013).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5(2): 131-154.
- 김형모. (2008).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피학대 아동 발견 및 사후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5(2): 21-40.
- 김형모. (2014). 한국 아동보호체계의 성과와 과제, 「한국아동복지학」, 46: 239-266.
- 김형태. (2016). 피학대아동 보호체계의 현황과 과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 53회 정기학술세미나」
- 류정희·박세경·이주연·박지윤·He Lijun·Morital·Akemi·YU Jianming. (2015).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국제비교연구 -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

중.

- 류이근·임인택·임지선·최현준·하어영. (2016).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별이 된 아이들 263명, 그 이름을 부른다」, 시대의 창: 서울.
- 문영희. (2010.)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 「피해자학연구」, 18(2): 83-104.
- 박명숙. (2006). 피해대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국가간 비교를 통한 한국적 함의 - 미국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7(5): 79-93
- 박미정·김현주. (2008).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업무수행방향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연구」, 6(1): 1-14.
- 박세경. (2015), 영국의 아동보호체계 운영 현황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222-224.
- 박진아·이경숙. (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경험, 인식 및 상담요구도에 관한 연구 -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5(3): 27-54.
- 배상균. (2015). 일본의 아동학대방지 대응에 관한 검토 - 일본 후생노동성의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28(4): 59-96.
- 베이비뉴스. (2015.11.16.).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사무기구 설치 추진”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2016). 「아동분야 사업안내[2]」.
- 양혜원. (2013), 아동학대와 부모의 친권에 관한 문제, 「가족법연구」, 27(1)
- 오미희. (2015). 한국과 일본의 아동학대 예방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 68: 359-383.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 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 이경숙·박진아·최명희. (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 실태조사, 「한국심리학회지」, 21(2): 227-252.
- 이경은·김미정. (2013). 아동 사례관리의 가족개입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3: 65-94.
- 이봉주. (2016).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현황 및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 아동 양육과 부모인식 개선 대토론회」.
- 이상희·하승수·이혜원. (2008). 한 일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 대한 비교 연구, 「아동과 권리」, 12(3): 225-148.
- 이수진. (201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제도의 현실과 개선방안, 「21세기사회복지연구」, 11(2): 139-162.
- 이종근. (2014).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의 보호: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및 신고율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26(2): 187-209.
- 이태수·정익중·김신열·박경수·이호균·이경림·박주현. (2008). 「아동청소년복지 네트워크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이희연·김경희·이정은·김지혜·정익중. (2014).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아동학대 사망사례 개입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5: 1-38.

- 임동호. (2008.) 아동보호체계 개선방안 고찰 - 미국과 영국의 아동학대 보호를 중심으로, 「아동복지연구」, 6(4): 7-95.
- 장화정·이상균·정선옥·김현수·김경희·김지연·강명주. (2015)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전경숙. (2014)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체계 구축방안 - 특례법 시행에 따른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정영철·이야리·류정희·이기호·유용덕·김경준. (2014). 「아동친화적 아동보호체계 지원을 위한 정보관리방안 마련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윤수·이정희. (2003).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2(3): 227-253.
- 정익중. (2009).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통합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연구」, 40(1): 297-322.
- 조민상·장석현. (201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발생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57: 189-216.
- 조선일보. (2014.04.08). “아동학대 특례법, 이대로라면… 실효성 없는 법조문으로 끝날 가능성 크다”
- 허남순. (1993).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 「아동복지학」, 1: 23-45.
- 허남순·고윤순. (2014). 한국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을 위한 특례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정복지연구」, 37: 1-19.
- Bromfield, L., & Holzer, P. (2008). *A national approach for child protection*. Melbourne: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 Burchat, A., & Harvey, A., (2006). *Preventing Child Maltreatment : a guide to taking action and generating evidence*, Geneva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 Chames, C., & Lomofsky, D. (2014). Towards effective child protection: Adopting a systems approach. In Mathew, S., Jamieson, L., Lake, L., & Smith, C.(ed). *South African Child Gauge 2014*, 43-50. Cape Town: Children's institute, University of Cape Town.
- Creswell, J. W. (2012). *Education Research: Planning, Conducting, and Evaluatio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Boston: Pearson.
- Delaney S., Quigley, P., & Shuteriqi., M. (2014). *Understanding and applying a systems approach to child protection a guide for programme staff*, Child Frontiers Ltd & Terre des Hommes.
- Heiselt, A. & Sheperis, C. J. (2010). Mixed Methods Designs. In Sheperis, Yong, J. S., & Daniels, M. H. (eds) *Counseling Research: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Mixed Methods*. Boston: Pearson.
- Krug, EG., Dahlberg, L., Mercy, J., Zwi, A., & Lozno, R.(ed). (2002).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 Mathews, S., & Benvenuti, P. (2014).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South Africa: Developing a prevention agenda. In Mathew, S., Jamieson, L., Lake, L., & Smith, C.(ed). *South*

- African Child Gauge 2014*, 26-34. Cape Town: Children's institute, University of Cape Town.
- Save the Children UK. (2009). *A 'Rough Guide' to Child Protection Systems*. London: Save the Children UK
- Tashakkori, A., & Teddlie, C. (1998). *Mixed methodology: Combin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London: Sage.
- Wulczyn, F., Daro, D., Fluke, J., Feldman, S., Glodek, C., & Lifanda, K. (2010).. *Adapting a systems approach to child protection: Key concepts and considerations*. New York: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

조범근(趙範根):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연구 관심분야는 공공관리, 정책 도구 등이다(beomgeuncho@gmail.com).

김준영(金准英): 송실대학교 행정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 단에서 근무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평가, R&D 정책, 환경정책이다(kimjy8809@korea.ac.kr).

배귀희(裴貴熙):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송실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인사, 공공 조직 및 관리, 협력적 거버넌스 등이다(khb07@ssu.ac.kr).

문명재(文命在): Syracuse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 관심분야는 공공관리, 정책도구, 조직론, 리더십 등이다(mjmoon@yonsei.ac.kr).

〈논문접수일: 2017. 1. 10 / 심사개시일: 2017. 1. 13 / 심사완료일: 2017. 2. 14〉

## Abstract

### A Study on Improving the Child Protection System

Cho, Beom-Geun

Kim, Jun-Yeoung

Bae, Kwi-Hee

Moon, M. Jae

Although more than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foundation of the child protection system, the number of child abuse reports has continuously increased. Using a mixed method by analyzing data collected from both focus group interviews and surve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Korean child protection system and makes recommendations to improve it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This study offers two broad implications for the child protection system from the hardware and software perspectives. First, to improve the hardware process, we argue that an improved network across the related public agencies is required, by changing and reconstructing the child protection system. The preventive role of local child protection agencies should be enhanced, while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needs to improve its support of the local agencies.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a child protection system in whic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akes a central role is also suggested. Second, from the software perspective, we need to enhance parent education and report responsibility and facilitate information sharing among the agencies engaged in the system, especially between the police and child protection agencies.

Key Words: Child abuse, Child welfare, Child protection system, Child protection agency, Mixed method